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택가격(거래가격) 전용면적(㎡)
	소재지	인구감소지역 []
	감면세액	과세연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뒤쪽 참조)	
관계 증명 서류	㉠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확인서류() ※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본 확인서류는 감면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3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 이전의 주택보유 사실여부 확인불가로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무주택자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같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
법제36조의3)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 란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무주택자를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에 []아니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소유 사실 여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본인)			
그 배우자			

㉡ 주택소유 사실 예외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 사항입니다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 소유하는 경우 포함)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처분하지 않았음 []해당사항 없음
- ②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및 면소재지 지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처분하지 않았음 []해당사항 없음
- 다만, 주택취득일 현재까지도 그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 ③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1호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하고 있음 []1호만 소유하고 있음 []처분하였음 []해당사항 없음
- ④ 낡은 주택이라도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처분하지 않았음 []해당사항 없음

㉢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이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정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4항)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